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정준호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 외 23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- 본 조례는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소비에 관한 시민 염려가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 유통 시 속성검사를 실시하고, 특히 수산물은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을 유통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 시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제39조 제1항에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수산물은 방

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정성이 확인된 수산물에 유통되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